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병역판정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3명(8급 3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서울지방병무청에 설치한 병역진로설계지원팀과 상향 조정한 직급(행정사무관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병무청 정원 6명(7급 6명)과 소속기관 정원 6명(8급 6명)을 상호이체하여 배정하고, 결원이 발생한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며, 소속기관 일부 정원의 직렬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6항 중 “13명(7급 2명, 8급 11명) 및 병역진로설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은”을 “13명(7급 2명, 8급 11명), 병역진로설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 및 병역판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8급 3명)은”으로 한다.

별표 3 중 행정주사보 “47”을 “41”로 하고, 행정서기 “1”을 “7”로 한다.

별표 3의2 중 행정주사보 “47”을 “41”로 하고, 시설주사보 1 다음에 “행정서기 6”를 신설한다.

별표 6 중 행정주사보 “265”를 “271”로 하고, 행정서기 “317”을 “311”로 하며, 행정서기보 “300”을 “303”으로 하고, 운전서기보 “24”를 “23”으로 하며, 위생서기보 “15”를 “14”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8”을 “17”로 한다.

별표 6의2 중 행정주사보 “267”을 “273”으로 하고, 행정서기 “320”을 “314”로 하며, 행정서기보 “282”를 “285”로 하고, 운전서기보 “24”를 “23”으로 하며, 위생서기보 “15”를 “14”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8”을 “17”로 한다.

국방부령 제102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4년 6월 30일”로, “2022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⑤ (생략)	제4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무연수 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사회복지요원의 연수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사회복지요원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3명(9급 3명), 제2항에 따라 중앙신체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병역판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및 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사회복지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41명(7급 26명, 8급 7명, 9급 8명),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u>13명(7급 2명, 8급 11명)</u> 및 병역진로설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u>1명(9급 1명)</u> 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⑥ ----- ----- ----- ----- ----- ----- ----- ----- ----- ----- ----- ----- ----- ----- ----- ----- <u>13명(7급 2명, 8급 11명), 병역진로설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 및 병역판정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3명(8급 3명)</u> 은-----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국방부령 제1021호 병무청과 그	국방부령 제1021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팀은 <u>2022년 6월 30일까지</u>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24년 6월 30일</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행정사무관 1명은 <u>2022년 6월 30일까지</u> 존속하며, <u>2022년 7월 1일</u>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 ----- <u>2024년 6월 30일</u> ----- <u>2024년 7월 1일</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병무청 공무원 정원표(제4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보			<u>47</u>	<u>41</u>	-6
	·		·	·	
	·		·	·	
행정서기			<u>1</u>	<u>7</u>	+6
	·		·	·	
	·		·	·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병무청 공무원 정원표(제4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주사보	• • <u>47</u>	• • <u>41</u>	-6
• • <u>행정서기</u>	• • <u><신 설></u>	• • <u>6</u>	+6
• •	• •	• •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보	<u>265</u>	<u>271</u>	+6
·	·	·	
·	·	·	
행정서기	<u>317</u>	<u>311</u>	-6
·	·	·	
·	·	·	
행정서기보	<u>300</u>	<u>303</u>	+3
·	·	·	
·	·	·	
운전서기보	<u>24</u>	<u>23</u>	-1
위생서기보	<u>15</u>	<u>14</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8</u>	<u>17</u>	-1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2]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공무원 정원표(제45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보	<u>267</u>	<u>273</u>	+6
·	·	·	
·	·	·	
행정서기	<u>320</u>	<u>314</u>	-6
·	·	·	
·	·	·	
행정서기보	<u>282</u>	<u>285</u>	+3
·	·	·	
·	·	·	
운전서기보	<u>24</u>	<u>23</u>	-1
위생서기보	<u>15</u>	<u>14</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8</u>	<u>17</u>	-1